

#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추천 계획(안)

국제대학교 교학처(교학2팀) 2023.4.

## 1 사업개요

- 사업명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773(2023.4.6.)
- 목적 :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재원 : 외부장학금(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금)
- 지원내용 : 3명, 총 9,000천원(3명×2개 학기×1인당 1,500천원)

유형		배정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지원방식
신규 선발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본 대학 배정 인원 3명	학기당 1,500,000원	2개 학기 (‘23-1, 2학기)	생활비 무상보조

- 지원대상 : ‘23-1학기 기준 ①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인 ②사회적 배려 계층 가정의 대학생이고, ③ ‘23-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계속장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없음, 직전 정규학기(‘23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C학점 평균) 이상 성적기준 적용
-------	---

- 선발(추진)일정 ※ 일정은 추천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대학/학생]	[대학]	[대학/학생]	[재단]
내용	[대학] 선발공고 안내  [학생]신청서, 구비서류 제출(제출처 : 교학2팀)	장학생 선발 및 심사* (자체 선발기준)	①[대학] 선발된 장학생 추천 등록 ②[학생] 추천대상자 학생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신청 대상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신규장학생으로 추천되어 통보받은 자 ③[대학] 대학 최종 추천 (~ 23.4.25.(화)까지)	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학생] 신청서제출 : 23.4.20.(목) 17시 마감	4.21.(금) (예정)	[학생] 피추천자 본인 장학금 신청, [대학] 장학생 추천 : 23.4.25.(화)까지	[발표] 23.4월말 (예정)

## 2

## 선발(추천)기준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으로(신입생 포함), 다음의 신청자격 기준에 충족되는 자

신청 자격	① '23-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②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③ '23-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필수사항 :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2.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유형		추천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지원방식
신규 선발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본 대학 배정 인원 3명	학기당 1,500,000원	2개 학기 (‘23-1, 2학기)	생활비 무상보조

3. 선발(추천)기준 : ‘23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내 중 낮은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선발(추천)

구분	내용(배점)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23-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단, 계속장학생('23-2)의 경우 소득구간 기준 없음)				
	· 소득구간별 배점기준				
	소득구간(분위)	0구간	1구간	2구간	
	배점	100	95	90	
성적기준	· 신규 선발 성적기준 없음 (단, 계속장학생('23-2학기)의 경우 직전 정규학기 '23-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적용)				
우선순위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구간(분위) 점수 상위자	학생가장, 조손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9순위	10순위
				주거비지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또는 입학성적(총점) 상위자

	<p>· 심사방침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심사함</p> <p>① 심사 순위 : 소득분위 낮은 순 →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순위 → (동점자 발생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우선선발 → 생활비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선발 → 재학생 우선선발</p> <p>※ 신청유형을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반영하여 심사</p> <p>② 소득, 유형별 우선순위가 동점인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심사 (1순위) 성적이 우수한 학생 우선선발 : 재학생(직전학기성적), 신.편입생(입학성적 총점) (2순위) '23-1학기 생활비 형식의 장학금(무상보조)를 받지 않은 학생 (3순위) 위 심사순위와 1~2순위가 동일할 경우 재학생 우선선발</p>
--	--

4. 장학생 세부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5. 장학생 탈락기준

-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 \*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구분	내용(배점)
중복지원 불가	<p>① '23-1학기 생활비형식의 장학금(무상보조)을 100만원 이상 받은 학생</p> <p>②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p>
신청내용	<p>·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p> <p>-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p>
계속 장학생	<p>·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미 충족될 경우 '22년 2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p> <p>· 계속 장학생 심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없음, 직전 정규학기 ('23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p>
학적변동	<p>·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p> <p>-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p> <p>· 장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p> <p>-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p>

6. 유의사항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붙임 1.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신청서 1부.
2.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 자격 및 제출서류 1부.
2. 주거비 지원 필요자(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제출 서류(예시) 1부.
3. 가정외보호 시설(아동복지시설 출신확인서) 출신자 제출 서류(예시) 1부. 끝.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신청서**

학과/전공명		학번		성명		연락처(휴대폰)	
장애인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가정의 보호시설 출신	학생가장, 조손가정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주거비 지원필요자

**증빙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증빙서류 1부.(붙임#2 참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내용	보유기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대상자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식별정보(학과, 학번, 성명, 학년, 연락처 등)</li> <li>직전학기 성적(재학생만 해당)</li> <li>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소득구간 및 중복지원 확인</li> </ul>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2. 장학금 신청자는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 약 서**

본인은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 사업”의 선발(추천)요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의 모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장학생 자격이 상실(탈락)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내용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계속장학생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탈락 (직전 정규학기 ‘23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기타	기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기술된 장학생 자격 상실(박탈) 사유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 청 인

(인)

**국제대학교총장귀하**

## 붙임 2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 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자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li> <li>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li> </ul>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li> <li>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li> </ul>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li> </ul>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p>【학생가장 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li> <li>(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li> <li>(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li> </ul> <p>【조손가정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li> <li>*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li> <li>※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li> </ul>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li> <li>*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li> <li>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li> <l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li> </ul>
6.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li> <li>*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증명서</li> </ul>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li> <li>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li> </ul>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he지역 출신 학생</li> <li>(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li> <li>(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li> <li>기숙사, 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li> <li>※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li> <li>※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 대학생(신청자 본인)</li> <li>※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li> </ul>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붙임 3****주거비 지원 필요자 제출 서류****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p>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하숙집·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첨부물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 하나 제출		

<b>붙임 4</b>	<b>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제출 서류</b>
-------------	---------------------------

## 아동복지시설 출신확인서

1. 보육원장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기재)	주 소	연락처
	540319 - 1(예시)		
2.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기재)	주 소	연락처
	940607 - 2(예시)		
<p>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보육원 출신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확인자    주            소        :</p> <p style="margin-left: 150px;">성            명        :</p> <p style="margin-left: 150px;">사업자등록번호 :</p> <p style="margin-left: 200px;">(인) 또는 (기관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유의사항	확인자와 보육원장이 다른 경우, 기관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